

## LPG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방안 검토의견

최근 우리회는 LPG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과 LPG유통구조개선 및 안전관리체제 개선방안의 동시 조속 실시를 건의했다.

### □ 검토배경

- 최근 LPG차량의 증가로 기존 충전소중 대도시 도심권 소재 및 고속도로 소재 충전소의 경우 시설 개보수 및 용량증설이 요구되고 있으나, 신규 안전거리 적용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
- 따라서 대도시 도심권 및 고속도로 소재 충전소는 충전대기시간이 점증하는 등 포화상태로 안전저해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개선대안 필요

### □ 문제점

- LPG차량의 증가에 따라 최근 신규충전소도 급증하고 있으나 정작 필요한 지역은 제한적임
- 대도시 도심권 { 주거·상업지역은 설치 불가 (건축법)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주민 민원 (남비현상)
- 고속도로 : 휴게소내에 설치할수밖에 없는 제약
- 한편 대도시 도심권 및 고속도로 소재

충전소는 공급능력 초과로 안전관리의 한계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

- 따라서 대도시 도심권 및 고속도로는 기존 충전소의 확충이 요구되나, 신규 안전거리를 확보할수 없는 실정임
- 99. 7. 1 LPG법시행규칙 개정시 안전거리를 확대(98 부친·익산충전소 폭발사고 대응)하면서, “부칙 제3조” 경과조치로 기존 충전소는 종전 안전거리를 적용토록 하였으나 “단서” 조항에「사업소 위치변경, 저장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, 저장 또는 가스설비의 능력변경」은 신규 안전거리를 적용토록 함

### □ 개선방안

- 대도시 도심권 및 고속도로에서는 신규 충전소 증가에 한계(특히 주민반대 민원)가 있으므로 기존 충전소의 활용도 제고 필요
- 따라서 기존 충전소의 확충을 위한 법규 정비 필요  
(즉 기존 충전소의 시설 개보수 및 증설

- 시 충전 안전거리를 적용토록)
- LPG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중 단서를 삭제 또는 개정하는 방안
- LPG법시행규칙 제4조 변경허가 내용을 개정하는 방안

※ 기존 충전소의 증설허용은 “도심충전소 외곽이전방침”과 관련하여 기존업계 이익 보호라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일부의 반사적 이익일뿐이며 특히 안전을 도외시한 근시안적 사고임

**기존 충전소의 확충 및 안전강화방안**

- 저장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
  - 디스펜서 위치변경
  - 배관 위치변경
  - 저장탱크 위치변경 등
- 저장 또는 가스설비의 능력변경
  - 저장탱크 증설 (10톤→20톤 등)
  - 디스펜서 추가설치
  - 펌프 등 동력 마력수 증대
  - 배관구경 확대 등

**LPG 유통구조개선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의 동시 조속 실시 건의**

- 1.우리 LPG충전 및 판매업계는 도시가스의 확산에 따른 산업위축에도 불구하고 서민대중 연료공급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- 2.한편 귀부에서도 지난해부터 LPG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통구조개선과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화방안을 검토하시어, 최근 가스산업과에서는 “LPG유통구조개선방안”으로, 에너지안전과에서는 “LPG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”으로 구체화한바 있습니다.
- 3.그러나 우리 업계에서는 양 방안이 수레의 두바퀴와 같이 동시에 굴러야만 제

기능을 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. 즉, 충전소·판매소·소비자간에 용기를 매개로 하는 고정거래를 통해 안전관리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동시에 기할수 있다는 점입니다.

- 4.따라서 우리 LPG충전 및 판매업계는 가스산업과의 LPG유통구조개선방안(충전자 상호표시 등)과 에너지안전과의 LPG안전관리체계개선방안(구역판매제를 포함한 안전계약제 등)이 동시에 제도화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오니 조속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